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수정부분
-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수정부분
- | 범죄군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수정안

| 약 어 표 |

-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적용범위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 간등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인질살해(형 법 제324조의4),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항), 특가법상 보 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위 각 범죄의 미수죄(형법 제254조, 제324조의5, 제 342조, 성폭법 제14조,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함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상한을 2/3로, 하한을 1/3로 각 감 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형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약취 · 유인 목적이 살인, 간음, 추행 등 비난할 만한 목적인 경우(제4유형의 경우) • 강도강간범인 경우(제4유형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강(누범)
	행위		• 소극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일반 양형 인자	행의자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제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약취 · 유인 미성년자 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2010. 7. 15. 공개된 성범죄 양형기준(수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유형의 정의

○1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 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2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청산 요구에 앙심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 품고 살인
 - 시비(말다툼, 몸싸움)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 이유 살인
 - 채무변제 독촉 이유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하게 할 목적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배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 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 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 약취 · 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05 -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 · 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양형인자의 정의

○1 ■ 피해자 유발

-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

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2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 타인의 강압이나 해악 고지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다만,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도 않은 경우

03 • 계획적 살인범행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05 •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

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07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08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9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 하지 않는다.

10 • 소극가담

-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 7. 15. 공개된 성범죄 양형기준(수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12 -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그 미수범죄, 성범죄, 강도 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물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살인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 중한 상해 • 피해회복 없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수법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지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 유발(보통)
사유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 실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 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 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수정부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적 기준

02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_	일반강제추행 (제1 - 1유형)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1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제1 - 2유형)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제1 - 3유형)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13세	의제강제추행 / 의제강간 (제2 - 1유형)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2	미만 대상	강제추행 (제2 - 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상해 / 치상	강제유사성교 (제2 - 3유형)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2년
		강간 (제2 - 4유형)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0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 /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7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트 별 양형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행위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가담	
^{달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상당 금액 공탁진지한 반성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수정부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01 일반적 기준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0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7	분	감경요소	기중요소
특별	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행위	• 소극가담	• 특수강도 범행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범죄군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수정안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 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기준안

- | 공무집행방해범죄
- | 마약범죄
- | 사기범죄
- | 사문서범죄

| 약 어 표 |

• 마약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공용물무효·파괴(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제14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	분	감경요소	기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 적절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제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제1유형) 공항)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지수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 유형)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mark>02 ⋅ 공용물무효</mark> ⋅ 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OIHI	행위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3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지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OIHL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 • 공무집행방해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시퇴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2 • 공용물무효 · 파괴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형법 제141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 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03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01 • 공무집행방해

가.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하다.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 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가담

-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공용물무효 · 파괴

가.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❸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 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 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

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13 -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포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자수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 실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 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 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 제11호 내지 제13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제8호,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 투약 · 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 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중

○2 • 매매 ·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기타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의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중

03 • 수출입 · 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등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앙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의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 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중

04 ·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중

유형의 정의

○1 • 투약 · 단순소지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 환각물질 - 섭취 · 흡입/같은 목적 소지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소지 · 소유 · 사용 · 관리 · 조제 · 투약 · 처방전 발부 - 사용 / 장소 · 시설 · 장비 · 자금 · 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4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향정 마.목 - 사용 / 장소·시설·장비· 자금·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제2유형	• 대마 - 재배 · 소지 · 소유 · 운반 · 보관 · 사용 - 흡연 · 섭취 / 같은 목적 소지 - 사용 / 장소 · 시설 · 장비 · 자금 · 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8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 자·종묘 소지·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1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 / 같 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2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소지 · 소유 · 사용 · 관리 · 조제 · 투약 · 처방전 발부 - 상습범 - 사용 / 장소 · 시설 · 장비 · 자금 · 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제3유형	• 향정 다.목 - 소지 · 소유 · 사용 · 관리 · 조제 · 투약 · 처방전 발부 - 상습범 - 사용 / 장소 · 시설 · 장비 · 자금 · 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마약 - 소지 · 소유 · 관리 - 상습범 - 사용 / 장소 · 시설 · 장비 · 자금 · 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관리법제60조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제4유형	• 디아세칠모르핀, 염류, 함유물 - 소지 · 소유 · 관리 · 수수 · 운반 · 사용 · 투약 · 교부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제4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상습범 - 사용 / 장소·시설·장비· 자금·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제6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제2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mark>○2</mark> • 매매 · 알선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 판매 · 제공	- 유해 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유형	• 항정 라.목 - 매매 · 알선 · 교부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 항 제4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대마 - 대마 수수 - 대마 · 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 · 알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 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 항 제8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항정 나.목 - 매매 · 알선 · 수수 · 교부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 항 3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 향정 다.목 - 매매 · 알선 · 수수 · 교부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 항 3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제2유형	• 대마 - 매매 · 알선 / 같은 목적 소 지 · 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항 제12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 성분 함유 원료 · 종 자 · 종묘 - 관리 · 수수 · 성분 추출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 · 알선 · 수 수 / 같은 목적 소지 · 소 유 · 시용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항 제5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분	구성요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2유형	• 항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 · 알선 · 수수 / 같은 목적 소지 · 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 · 교부 · 흡연 · 섭취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항 제13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마약 - 매매 · 알선 / 같은 목적 소 지 · 소유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유형	• 항정 가.목 - 매매 · 알선 · 수수 / 같은 목적 소지 · 소유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 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 향 정 범죄 - 매매 · 수수 · 조제 · 투약 · 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 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4유형	• 마약, 항정 가.목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등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 수출입 · 제조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 · 매매 · 제조 목적 재 배 / 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 료 · 종자 · 종묘 소지 · 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제2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유형	• 대마초 - 대마의 수출입 · 매매 · 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제11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항정 라.목 - 수출입 · 제조 / 같은 목적 소 지 · 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제4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 / 2 가중
제2유형	• 대마 - 수출입 / 같은 목적 소지 · 소유 ※ 상습범은 제4유형에 포섭 - 제조 / 같은 목적 소지 · 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제5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제12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 · 제조 / 같은 목적 소 지 · 소유 -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제8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유형	•마약 - 수출입 · 제조 / 같은 목적 소 지 · 소유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 · 제조/같은 목적 소 지 · 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 / 수출입 / 같은 목적 소지 · 소유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제3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항정 나.목 - 수출입 · 제조 / 같은 목적 소 지 · 소유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3유형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 질 제조 · 수출입 / 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 · 소유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 영리 목적 수출입 · 제조 등 - 상습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 대량범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항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 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징역
제2유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항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가법 제11조 제2항제2호 마약관리법 제 58조제1호내지 제4호, 제6, 7호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제3유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항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5,000만 원 이상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관리법 제 5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 7호 	•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

양형인자의 정의

○1 • 투약 · 단순소지 등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 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소극가닭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매매 · 알선 등, 수출입 · 제조 등, 대량범

가.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의 경우)

- ☑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 중 대마 수출입·제조 및 같은 목적 소지·소 유 행위(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 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 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 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 상습범인 경우 대량범인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또는 적극적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 실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 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⑧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 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 (제348조), 상습사기(제351조), 특경법상 사기(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 (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7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소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습성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횡령 · 배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또는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니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경우 	• 상습성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횡령 · 배임 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 - 일반사기

○ 제1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5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 • 조직적 사기

- □ 조직적 사기라 함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소극적 또는 부작위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 등)
 - 소극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내부비리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됨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 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공통원칙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 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1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하한의 1/2을 감경한다).
 - ②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와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4. 이종경합범 가중방법' 의 예에 따른다.

04 이종경합범 가중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 한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 이종경합범 중에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위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을 먼저 적용하 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이종경합범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 일반사기에 해당되는 범죄와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기의 형량범위표와 조직적인 사기의 형량범위표 중 어느하나를 선택한 뒤 총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 수수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 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무런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손해발생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 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문서 등 위조·변조(형법 제231조), 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제232조의2), 허위진단서 등 작성(제233조), 위문서 등의 행사(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 · 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 · 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 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공문서 위 · 변조 등 포함)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전문 위 · 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차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위 · 변조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02 ⋅ 허위진단서 등 작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제2유형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에 따라 취한 불법 적인 이득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일반	행위	• 소극가담	• 허위진단서를 스스로 사용한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1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사문서 등 위조 · 변조(형법 제231조), 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제232조),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제232조의2). 위 문서 등의 행사(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

02 - 허위진단서 등 작성

- 허위진단서 등 작성(형법 제233조). 위문서 행사(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
- ☑ 제1유형: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 편법적인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인 경우
 -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청구를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끼워 넣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
 -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자나 보험금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 에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 한 경우
- □ 제2유형 :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 보험금 편취 목적, 병역회피 목적,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격취득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격 취득 목적 등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 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범행가담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기가 단순 호기심 · 과시 목적인 경우
-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다.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 각한 경우

마.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조기술자와 조직의 하부 실무자 내지 조직책이 아닌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예 : 단순한 날짜 변조. 단, 이 경우에 도 권리의 소멸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위 · 변조범 내지 위 · 변조단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 · 변조범 내지 알선 책 등 위 · 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 · 변조한 경우(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 변조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 · 변조를 의뢰하거나 위 · 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 · 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

□ 위 · 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인 공신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다만, 위 · 변조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큰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소극가담

-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하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 원칙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 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 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

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1 • 사문서위조 · 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전과)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중대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죄 	
일반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적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02 • 허위진단서등 작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5년 이 내 3회 이상 벌금 전과) •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큰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범행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 지시 ·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지시 내지 교사 범행 후 증거 은폐 내지 은폐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공범으로서 소극적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 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

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